#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8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민형배・이정문・김영배

정준호・김문수・이수진

문정복 • 이연희 • 김용민

어기구 • 박홍배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했습니다. 음주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회적 물의에 대한 비판은 큰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해당 연예인을 모방한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 보완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 다(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제2항 중 "한정한다)은"을 "한정한다) 또는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호흡조 사 개시 직전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
| 전 금지) ① ~ ④ (생 략)        | 전 금지) ① ~ ④ (현행과      |
|                          | 같음)                   |
| <u>&lt;신 설&gt;</u>       |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      |
|                          | 찰공무원의 호흡조사가 개시되       |
|                          | 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      |
|                          | 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
|                          |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      |
|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u>⑤</u> (생 략)           |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
| 제148조의2(벌칙) ① (생 략)      | 제148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  |
|                          | <u> </u>              |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 ②                     |
|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                       |
| 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                       |
|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          |                       |
| 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                       |
|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                       |
| 로 <u>한정한다)은</u> 1년 이상 5년 | 한정한다) 또는 제44조제5항을     |
|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위반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음       |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       |
|                          | 로 호흡조사 개시 직전 술 또      |
|                          | 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

|             | 사람은            |  |
|-------------|----------------|--|
|             |                |  |
|             |                |  |
| ③ · ④ (생 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